

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

성 북 구
(복지정책과)

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의 안 번 호	46
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1월 일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고령화 시대 지역 어르신들의 낙상예방을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제고하고자 2021년 9월 성북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였음.
- 나.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북마을관리소 민간 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고령자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와 사후관리의 지속적 제공, 2023년 조성 예정인 성북구 고령자 지원주택의 관리와 운영 등 성북마을관리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제3항 및 제10조(계약체결 등) 제2항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시설 : 성북마을관리소
- 위 치 : 성북구 정릉로38라길 32(정릉동)
 - 규 모 : 지상1층(연면적 36 m^2) 모든 시설물과 장비
- 나. 위탁기간 : 2023.01.01. ~ 2025.12.31.(3년)
- 다. 위탁사무 : 성북마을관리소 관리·운영

- 어르신 낙상예방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제공
- 집수리 공구 무료 대여
-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
- 주택관리 및 수선을 위한 주민대상 기술교육
- 성북구 고령자 지원주택(희망아지트) 관리·운영

라. 수탁자 선정방법

-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의 적격 심의·의결을 통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함.
- 단,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 시 공개모집 공고 후 신청 법인 적격 심사하여 재위탁 선정(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득점자 선정)

3. 관련근거

가.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동의하여야 한다.

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
1.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자활·취업·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문화·예술·영상·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4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사회적기업, 공정무역,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7.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
8. 그 밖에 청소, 경비, 교통,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제10조(계약체결 등)

-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(개정 2016.12.29.)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